

의안번호	2205225
의 퇴 인	김남희의원
회 답 일	2025.01.09.
추계번호	24C48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 (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함 8. 의료기기(「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함)의 지급 또는 대여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1조 (요양급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요양급여(안 제41조)

-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기¹⁾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이

1)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²⁾.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³⁾,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⁴⁾⁵⁾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급여의 범위, 의료기기 급여를 처방받게 될 건강보험 가입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보험급여 범위, 방법, 절차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⁶⁾
 - 현행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선별급여, 방문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법 제49조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음([표 1, 2] 참조)
 - 따라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요양비 외에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됨

2)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3)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5) 2021~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6) 동법 제41조제3항은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7)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보다 많을 때는 구입금액을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표 1] 요양비(의료기기) 급여 종류 및 급여 기준

연번	급여종류	급여내용	공단부담률
1	만성신부전 환자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복막관류액	90%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0,420원/일)	90%
2	산소발생기	▪ 가정용 산소발생기 대여료(120,000원/월)	90%
		▪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200,000원/월) ※ 15일 임대시 50%, 16일 이상 100%	90%
3	당뇨병 소모성재료	▪ 대상 : 1형, 2형, 임신중 당뇨병자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 당뇨유형에 따라 (일/900~2,500원) 차등 지원	90%
		▪ 대상 : 1형 당뇨, 임신중 당뇨병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10,000원/일)	70%
		▪ 대상 : 19세미만 1형 당뇨병자 ▪ 정밀인슐린펌프와 연동 가능한 전극(11,000원/일) ▪ 복합형 인슐린펌프 사용 관련 소모성재료(4,500원/일)	전극 90%, (다만, 복합형 인슐린펌프용 소모성재료 70%)
4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도뇨카테터 지원(9,000원/일, 최대 6개/일)	90%
5	인공호흡기	▪ 인공호흡기대여료 (356,000~535,000원/월) ▪ 기본소모품 (60,000~80,000원/월) ▪ 선택소모품 (커넥터 12,600~29,000원/월) (마스크 360,000~400,000원/연)	90%
6	기침유발기	▪ 기침유발기 대여료(160,000원/월)	90%
7	양압기	▪ 양압기 대여료 (76,000~126,000원/월)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95,000원/1개(연))	순응 후 80% 순응기간 중 50%
8	연속혈당 측정기	▪ 21만원/3개월	70%
	인슐린 자동주입기 (펌프)	▪ 19세이상(170만원/개/60개월)	70%
		▪ 19세미만 소아·청소년 － 정밀 인슐린펌프 기능별 (170~450만원/개/60개월)	9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2] 요양비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10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26,386	254,621	2,466,506	293,626	2,315,354	285,768
만성신부전	21,816	9,358	22,081	9,408	16,538	7,097
산소치료	255,540	41,727	292,773	52,027	280,197	53,084
당뇨소모성	778,047	87,476	816,248	96,989	727,805	92,024
자가도뇨	24,852	16,900	26,738	18,337	25,443	17,593
인공호흡기	64,405	32,114	62,156	30,732	61,658	30,778
기침유발기	13,607	1,884	11,586	1,598	12,173	1,680
양압기	959,956	63,599	1,229,527	83,282	1,190,765	82,589
연속혈당측정기	7,901	1,250	5,061	850	370	171
인슐린자동펌프	262	313	336	403	405	752

주: 2024년 10월 말 기준 지급액이며, 환입금은 제외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